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20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7
[참고] 2024년도 보훈급여 월지급액	8

I. 개요

1.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0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8. 21.
- (3) 회 부 일 : 2024.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됨. 이는 보상금 수령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상금의 한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결과, 다수의 수급자가 이 한도를 초과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2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제외)</u>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에서 제외한다.</u> 1.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3.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됨.¹⁾

- 선정기준액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각각 월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원과 340만 8천원임.²⁾

□ 한편 소득인정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재산의 범위와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각각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³⁾

정부는 2022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고,⁴⁾ 이에 따라

1)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202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3)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보상금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또는 그 유가족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기회가 확대된 측면이 있음.

- 종전에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제14조)·간호수당(제15조)·무공영예수당(제16조의2)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제6조)만이 제외되었으나,
- 2022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월액) 중 43만원⁵⁾ 이하의 금액 등도 소득평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음.

□ 그러나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의 보상금(월액) 중 4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되어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19혁명공로수당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3(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상금 및 수당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상금 및 수당의 금액은 월 43만원 이하로 한다.

□ 이에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훈급여”라 한다) 전액을 소득평가액 산정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유공자의 공적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면서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취지로 보임.

□ 다만, 보훈급여 전액을 소득평가액 산정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보훈급여 수준이 높은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보훈급여 비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 기초연금 도입 취지⁶⁾를 고려하여 보훈급여만으로 노후의 안정적 소득보장이 가능한 경우와의 형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6)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기초연금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되지만,

보훈급여 가운데 무공영예수당(월 43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은 이미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가 소득평가액에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제외하지 않은 것이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⁸⁾, 보훈급여 수급자에 비해 총소득은 낮으나 보훈급여가 아닌 소득이 높은 보훈급여 비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⁹⁾에서 소득인정액 산정범위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 공적이전소득(보훈급여)의 공제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

8)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 191 결정.

9)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024년도 보훈급여 월지급액

□ 독립유공자(단위: 천 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 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7,188	2,325	9,513	
		4 등급		3,827	1,920	5,747	
		5 등급		3,026	1,725	4,751	
	건 국 포 장			2,168	1,575	3,743	
	대 통 령 표 창			1,425	1,575	3,000	
유 족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3,185		3,185	
			기타유족	2,757		2,757	
		4등급	배우자	2,346		2,346	
			기타유족	2,297		2,297	
		5등급	배우자	1,910		1,910	
			기타유족	1,866		1,866	
	건 국 포 장		배우자	1,342		1,342	
			기타유족	1,331		1,331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907		907	
			기타유족	889		889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 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 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 상이군경 등(단위: 천 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 이 군 경	1급1항	고 령	3,681	97	2,761	6,539
		일 반	3,681	-	2,761	6,442
	1급2항	고 령	3,471	97	1,909	5,477
		일 반	3,471	-	1,909	5,380
	1급3항	고 령	3,323	97	1,163	4,583
		일 반	3,323	-	1,163	4,486
	2급	고 령	2,955	97		3,052
		일 반	2,955	-		2,955
	3급	고 령	2,762	97		2,859
		일 반	2,762	-		2,762
	4급	고 령	2,317	97		2,414
		일 반	2,317	-		2,317
	5급	무의탁	1,919	274		2,193
		고 령	1,919	97		2,016
		일 반	1,919	-		1,919
	6급1항	무의탁	1,751	274		2,025
		고 령	1,751	97		1,848
		일 반	1,751	-		1,751
	6급2항	무의탁	1,612	274		1,886
		고 령	1,612	97		1,709
		일 반	1,612	-		1,612
	7급	무의탁	608	274		882
		고 령	608	97		705
		일 반	608	-		608
* 간 호 수 당			· 1급1항 3,061, 1급2항 2,945, 1급3항 2,832, 2급 979			
* 전 상 수 당			·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612	274		1,886
		고 령	1,612	97		1,709
		일 반	1,612	-		1,612
4·19혁명공로자			· 43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군경유족 등(단위: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 족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1,939	274	2,213	
			무의탁부모부양	1,939	149	2,088	
			고 령	1,939	149	2,088	
			일 반	1,939	-	1,939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681	274	1,955	
			무의탁부모부양	1,681	149	1,830	
			고 령	1,681	149	1,830	
			일 반	1,681	-	1,681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617	274	891	
			무의탁부모부양	617	149	766	
			고 령	617	149	766	
			일 반	617	-	617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1,906	274	2,180
				독 자 사 망	1,906	274	2,180
				고 령	1,906	97	2,003
	일 반			1,906	-	1,906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654	274	1,928	
			고 령	1,654	97	1,751	
			일 반	1,654	-	1,654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85	274	859	
			고 령	585	97	682	
			일 반	585	-	585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 몰 · 순 직		2,249	-	2,249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952	-	1,952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90	-	890	
		* 미성년제대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613(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72, · 신규승계자녀 : 516(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단위: 천 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 이 군 경	1급 1항		3,681	2,761	6,442
	1급 2항		3,471	1,909	5,380
	1급 3항		3,323	1,163	4,486
	2 급		2,955		2,955
	3 급		2,762		2,762
	4 급		2,317		2,317
	5 급		1,919		1,919
	6급 1항		1,751		1,751
	6급 2항		1,612		1,612
	6급 3항		1,083		1,083
	7 급		608		608
	* 간 호 수 당		· 상시 3,061/ 수시 2,041		
	* 전 상 수 당		· 90		
	* 부 양 가 족 수 당		· 배우자 100 / 미성년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 족	배우자	전몰·순직	1,939		1,939
		상이 1~5급	1,681		1,681
		상이 6급	617		617
	부 모	전몰·순직	1,906		1,906
		상이 1~5급	1,654		1,654
		상이 6급	585		585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몰·순직	2,249		2,249
		상이 1~5급	1,952		1,952
		상이 6급	890		890
	* 부 양 가 족 수 당		· 미성년 자녀 100/ 미성년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단위: 천 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재 해 부 상 군 경	1급 1항		2,577	1,933	4,510
	1급 2항		2,430	1,337	3,767
	1급 3항		2,327	814	3,141
	2 급		2,069		2,069
	3 급		1,934		1,934
	4 급		1,622		1,622
	5 급		1,344		1,344
	6급 1항		1,226		1,226
	6급 2항		1,129		1,129
	6급 3항		759		759
	7 급		426		426
	* 간 호 수 당		· 상시 3,061, 수시 2,041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 / 미성년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 족	배우자	사망	1,358		1,358
		1~5급 유족	1,177		1,177
		6급 유족	432		432
	부 모	사망	1,335		1,335
		1~5급 유족	1,158		1,158
		6급 유족	410		410
	자녀 (25세 미만, 장애)	사망	1,575		1,575
		1~5급 유족	1,367		1,367
		6급 유족	623		623
	* 부 양 가 족 수 당		· 미성년 자녀 100/ 미성년 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